



특허청

보 도 자 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3. 18.(금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2. 3. 18.(금) 14:30
담당 부서 <총괄>	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주무관 장남진 (042-481-5175)

벤처기업 지원으로 지식재산 경영 새로운 활력 불어 넣는다

특허청-법무부-벤처기업협회, 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·법무 상담,
최고경영자(CEO) 대상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등 협력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, 법무부(장관 박범계), 벤처기업협회(회장 강삼권)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해 3월 18일(금) 오후 2시30분, 벤처기업협회(서울 구로구)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
< 업무협약식 개요 >

- [일시 및 장소] 2022. 3. 18.(금), 14:30,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
- [협약참여자] 특허청-법무부-벤처기업협회
- [협약내용]
 - 창업 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 및 법무 상담·자문 지원
 - 벤처기업 CEO 대상 지식재산아카데미 과정 운영
 - 특허청 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·지원체계 구축
 - 특허청과 법무부 간 소멸특허 정보 및 소멸예상(포기예정) 특허 거래정보 연계를 통한 청년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

-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,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'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'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.
-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(스타트Law)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, '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'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.

참고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('스타트Law') 주요 기능

- (법률 지원)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'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'·'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' 등의 무료 법률자문·상담을 온라인상으로 지원
- (정보 제공)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자금, 기술, 영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

- 벤처기업협회는 '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' 과정을 개설·운영하고, V-ON(www.v-on.kr) 등 홍보채널을 통해 지식재산금융, 스타트Law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·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.

- 이와 더불어,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(포기예정)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Law와 연계하여 창업 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
참고 소멸특허를 활용한 사업화 성공 사례

특허	활용 사례	
• 코닝사 고릴라 글라스(코닝 1961년 특허출원) * 존속기간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은채 기간 만료		• Apple社가 '07년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채용
• IBM 레이저프린터(1974년 특허출원) * 존속기간이 만료된 1994년 이후 상용화		• HP, EPSON, 캐논 등이 개량특허 출원 후 상용화

-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·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-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에 관한 여러 서비스를 훨씬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-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,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다”며, “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

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-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“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을 위해서 법무부, 특허청, 벤처기업협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”임을 밝히고, 올해 2월 15일에 구축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‘스타트Law’ 소개와 함께,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타트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- 김용래 특허청장은 “그동안 특허청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, 상표·특허 출원 지원, 지재권 기반 R&D 분석,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,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”이라며, “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,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 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주무관	장남진 (042-481-5175)
<공동>	법무부 상사법무과	책임자	과 장	임철현 (02-2110-3629)
		담당자	사무관	김효선 (02-2110-3634)
<공동>	벤처기업협회 기획예산팀	책임자	팀 장	임경준 (02-6331-7010)

벤처기업의 지식재산(지식재산) 경영 강화 및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

법무부, 특허청, 벤처기업협회(이하 '협약기관'이라 한다)는 벤처기업의 지식재산(지식재산) 경영 강화 및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(이하 '본 협약'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 적) 본 협약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의 범위) 협약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상호 합의에 의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① '법무부'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(이하 '스타트Law'라 한다)을 통한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 상담 지원
2. 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 강의주제 및 강사 추천
3. 스타트Law 내 소멸특허 정보 및 소멸 예상 특허거래 정보 게재

② '특허청'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창업 벤처기업 대상 지식재산 상담 지원
2. 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 예산 지원
3. 소멸특허 정보 및 소멸 예상 특허거래 정보 제공 및 관련 상담 지원
4.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(이하 'R지식재산C'라 한다) 및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(이하 '지회'라 한다) 간 연계 등 상호 협력·지원 체계 구축
5.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지속적인 개발 및 시행

③ '벤처기업협회'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벤처기업 CEO 지식재산아카데미 과정 개설·운영
2. 지회 및 R지식재산C 간 상호 협력·지원 체계 구축 지원
3. 벤처기업협회 V-ON 등 홍보채널을 통한 지식재산금융, 스타트 Law 등 지식재산·법무 정책 홍보 지원

제3조(세부협약 이행) 협약기관은 본 협약서 제2조(업무협력의 범위)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무 이행을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를체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본 협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정보제공) 각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협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협약서의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7조(기타)

-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- ②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은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3월 18일



법 무 부
장 관 박범계



특 허 청
청 장 김용래



벤처기업협회
회 장 강삼권